

의안번호	2205760
의 퇴 인	민형배의원
회 답 일	2024. 11. 22.
추계번호	24D5275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 내용	비고
1	안 제5조(보상금)제1항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수배·연행 또는 구금을 당하거나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피해 기간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제3호 신설)	의무규정
2	안 제9조(심의와 결정)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등의 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지정·고시하는 소비자물가 지수를 반영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제2항) -제2항에 따른 현재가치 환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5조(보상금)제1항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9조(심의와 결정)제2항 및 제3항	

2. 상세 사유

가. 5·18민주화운동 관련 수배·연행 또는 구금을 당하거나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학사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안 제5조제1항제3호 신설)

- 현행법 제2조¹⁾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관련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이 관련자에 포함되어 있으나, 제5조²⁾에 따른 보상금 규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개정안에서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다만, 보상금 지급액은 피해기간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사망·행방불명 및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시에도 현행법 제5조에 따르면 월급여,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으로 하고 있는 등 개정안에 따른 보상금 지급 규모를 현시점에서 추정하기가 곤란함
 - 참고로 제7차(2014~2018년) 보상금 지급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수배

1) 현행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18민주화운동"이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2. "관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 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

마.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본조신설 2021.6.8.]

2) 현행법 제5조(보상금)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 결정 시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1.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의 유족: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여, 월실수입액(月實收入額)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單割引法)으로 중간이자를 뺀 금액

2.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여,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나. 상이를 입은 사람이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여,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노동력 상실을 및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뺀 금액

· 연행 또는 구금을 당하거나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을 받은 자³⁾에 대한 기타지원금⁴⁾으로 건당 100만원~500만원이 1,689건⁵⁾ 지급되었음

나. 보상금의 물가 인상분 반영(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안 제9조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의 보상금 등 금액 결정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의 보상은 현행법 제8조⁶⁾의 일부개정(2022년)에 따라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아 1990년 1차 보상 이후 8차 보상금 지급을 위해 현재 조사중으로 피해자의 명단이 확정되기 전임. 따라서 향후 5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보상금 지급 규모를 현시점에서 추정하기가 곤란함
- 참고로 행정안전부의 5·18민주화운동 보상금 지급 관련 예산으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2435-300)’ 세부사업의 ‘민주화운동 지원사업’ 내역사업에 2024년 38억원, 2025년(안) 170억원이 편성됨

3) 해직·학사징계를 받은 자는 미포함

4) 기타지원금은 현행법 제7조에 따른 생활지원금에 포함됨

현행법 제7조(생활지원금)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게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관련자 지원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 2,146건 신청을 받아 1,689건 지급됨

6) 현행법 제8조(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지수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지수현	02-6788-4831	zisu37@nabo.go.kr